

공 고

2020 -1143

종로구 빈집정비계획(안) 공람·공고

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‘빈집정비계획(안)’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9월 29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0. 9. 30. ~ 10. 16. (17일간)
2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팀(제1별관 3층)
3. 공람내용 :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
4.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
 - 가. 빈집정비계획의 개요
 - 나. 빈집정비계획의 근거 법률
 - 다. 빈집실태조사
 - 라. 빈집정비계획의 구상
 - 마. 빈집정비계획(안)

※ 빈집 철거 후 세금 부과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어 세금이 증가
될 수 있음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0. 10. 16.(금) 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(우편)

다. 제출서식 : 붙임서식

라. 제 출 처 : (우)03153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주거재생과 주거환경 개선팀

6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구청 주거재생과(담당 모성원, ☎02-2148-261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공 랑 의 견 서

	2020.09.30. ~ 2020.10.16			
				-